

2018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방재안전)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8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방재안전)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5일

충청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임용직급	선발인원	근무예정기관	담당업무(예정)
방재안전	생활안전	시설안전	1	충남학생수련원	■ 안전체험관 시설안전 체험시설 관리·운영
		수상안전	1		■ 안전체험관 수상안전 체험시설 관리·운영
	교통안전	교통안전	1		■ 안전체험관 교통안전 체험시설 관리·운영
	자연재난안전	자연재난안전	1		■ 안전체험관 자연재난안전 체험시설 관리·운영
	범죄안전	폭력안전	1		■ 안전체험관 폭력안전 체험시설 관리·운영
	보건안전	응급처치	1		■ 안전체험관 응급구조 체험시설 관리·운영

※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기간 : 최초 2년(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시험 방법

-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자격요건 등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에 적합한 기준(직무수행계획, 관련 자격증 등)을 평가하여 선발 예정 인원의 5배수까지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함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가장 우수한 사람을 최종 합격자로 결정

3. 시험 일정

원서접수 기간	구 분	시험장소공고	시험일	합격자발표
2018.08.06.(월) 09:00 ~	서류전형	-	-	2018.08.10.(금) (예정)
2018.08.08.(수) 17:30 (12:00~13:00 제외)	면접시험	2018.08.10.(금) (예정)	2018.08.16.(목) (예정)	2018.08.17.(금) (예정)

가. 상기 시험일정은 서류검증,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나. 시험장소 및 시간은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ne.go.kr>)에 게시함
 다.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고하고 개별통지 하지 않음

4. 응시자격 요건

- 가. 공통요건(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규정한 대상이 아니어야 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p>■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나. 자격요건

분야	자격요건
방재안전8급 (일반임기제공무원)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조〔별표 1〕의 “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자격기준 ”을 갖춘 자 ※ 안전관리 분야 근무경력·자격·학위 등의 구체적인 범위는 “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26호, 2018.4.2.〕에 따름

다.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0. 12. 31. 이전 출생자)
- (공통)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라. 거주지 및 성별 제한 : 없음

5. 응시원서 접수

- 가. 응시원서 교부 :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www.cne.go.kr) ‘고시/공고’ 란의 공고문 첨부자료를 내려받아 사용

나. 접수장소 : 충청남도교육청 3층 총무과 인사팀

다. 접수기간 : 2018. 8. 6.(월) ~ 8. 8.(수) [3일간]

라. 접수시간 : 09:00 ~ 18:00

(접심시간 12:00 ~ 13:00 제외, 수요일은 17:30까지 접수)

마. 접수방법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구비하여 제출

(단, 본인 및 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접수는 불가함 - 원본대조 등의 사유)

6. 제출 서류

구 분	내 용	비고
1.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응시원서 서식을 출력하여 자필 작성 후 접수 ○ 이메일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 응시수수료[납부고지서에 의한 납부] : 금5,000원 ※ 납부고지서 : 충청남도교육청 총무과 인사팀에서 발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면 응시수수료 면제	필수
2.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관련 분야 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의해 증명가능한 것에 한해 인정	필수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	필수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 A4용지 3매 이내 - 임용예정직렬에 임용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직무수행계획을 자유롭게 기술	필수
5. 관련 자격증 증명서 1부	○ 공고일 이후 관련 기관·협회에서 발행	해당자만 제출
6. 학위증 1부	○ 학사 이상은 전공분야 표시 ○ 석사 이상은 졸업증명서와 학위증 모두 제출 ※ 관련 서류가 외국어로 기재된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추가로 제출	해당자만 제출
7. 관련분야 경력 증명서 1부	○ 공고일 이후 발급된 원본만 인정함 ※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서류 또는 기재사항이 미비하여 경력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불인정(스캔, E-mail 칼라출력, 팩스 수신본 등 사본제출 불가) ○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경력 인정(불명확한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 업무	해당자만 제출

구 분	내 용	비고
	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 민간 근무경력의 경우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기타 등록증·허가증 사본 등을 반드시 첨부	
8.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경력기간 등재	경력 증명서 제출자만 제출
9. 주민등록초본 1부	○ 공고일(2018.07.25.) 이후 발행 ○ 남성의 경우 병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필수
10. 동의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서명필수) 1부	필수

[주의사항]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자격증, 학위증 또는 경력증명서 등)은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 증명서류(자격증, 학위증 또는 경력증명서 등)로 제출하는 것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은 증명서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7. 보수 및 복무

가. 보수

- 충청남도교육감소속 지방임기제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1차연도는 채용구분별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며, 2차연도부터는 성과에 따라 연봉 조정

구 분	상한액	하한액	비고
8급(상당)	51,705천원	36,882천원	연봉의 급여는 보수 법령에 따라 지급

나. 복무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준용

8. 기타유의사항

- 가.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 인사 관계 법령을 준용합니다.
- 나.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책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신원조사, 자격증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라.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에 의거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마.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바.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사.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아.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교육청 총무과(인사팀)로 문의 바랍니다.
- 전화 : (041) 640-8026
 - 주소 : 우)32255 충남 홍성군 홍북면 선화로 22 충남교육청 총무과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7일 전까지 충청남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ne.go.kr>)고시·공고란에 공고합니다.

(방재안전) 직무기술서

직무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방재안전	방재안전8급(일반임기제)	6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충청남도학생수련원		안전부(신설예정)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체험시설 운영계획 수립 ○ 안전체험시설 관리 ○ 학생 안전체험 교육 ○ 안전체험시설 안전점검 등 	
필요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필요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안전, 수상안전, 교통안전, 자연재난안전, 폭력안전, 응급처치 등의 안전관리 분야 전문지식 ○ 안전체험시설 지도 요령 ○ 안전체험시설 안전점검 지식 	
응시 자격 요건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제2조 [별표 1]의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 안전관리 분야 근무경력·자격·학위 등의 구체적인 범위는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26호, 2018.4.2.]에 따름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필체로 작성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합니다.
 - 가.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 나.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 다.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 라.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마.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해당 증명서 첨부

【별지 제2호 서식】

이 력 서

공통사항

응시번호		응시 분야	예) 생활안전-시설안전	성명	
------	--	-------	--------------	----	--

응시자격

자격증

* 반드시 작성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예시] 교통안전관리사		

근무경력

* 해당자는 반드시 작성

근무기관 (부서명)	근무기간	직 위	담당업무

학위 요건

* 해당자는 반드시 작성하되 학교명은 기재하지 않음

최종학력	학사 이상 학위 취득시 기재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성 명 : (인)

【별지 제3호 서식】

자 기 소 개 서

응시분야	응시직렬	성 명	생년월일(연령)	서 명 (자필)
예)생활안전	예)시설안전			

[작성 용지 및 기준]

- 작성용지 : A4 단면인쇄
- 분량은 3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글자체 : 주된 글자체는 휴먼명조로 하되 다른 글자체를 일부 혼용 가능
- 글씨크기 13~15(일부필요부분 크기조정 가능), 줄간격 150~170mm, 용지 여백은 위쪽 20mm, 아래쪽 10mm, 머리말, 꼬리말은 각 10mm 작성(기타 문단 위 간격 등은 지정하지 않음)

[작성 내용]

- 자유롭게 기술

[유의사항]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별지 제4호 서식】

직 무 수 행 계 획 서

응시분야	응시직렬	성 명	생년월일(연령)	서 명 (자필)
예)생활안전	예)시설안전			

[작성 용지 및 기준]

- 작성용지 : A4 단면인쇄
- 분량은 3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글자체 : 주된 글자체는 휴먼명조로 하되 다른 글자체를 일부 혼용 가능
- 글씨크기 13~15(일부필요부분 크기조정 가능), 줄간격 150~170mm, 용지 여백은 위쪽 20mm, 아래쪽 10mm, 머리말, 꼬리말은 각 10mm 작성(기타 문단 위 간격 등은 지정하지 않음)

[작성 내용]

- 직무수행계획에 대하여 자유롭게 기술

[유의사항]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성 명 :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충청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임용시험 응시자로서 자격, 경력 등 자료검증 및 범죄 경력 조회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같은 법 제15조 등에 따라 업무 관련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하며, 아래사항에 대하여도 본 동의서로 갈음합니다.

- 주민등록번호(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 본인의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이 인사검증에 필요한 자료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한 효력 발휘

2018. . .

동의인 : (서명)

충청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